

사단
법인
대한속 기협회

제 1 회 임시총회 회의록

1969. 5. 1

개최장소 신문회관 대강당

회 순

1. 회 개
2. 국민의례
3. 회장인사
4. 내빈축사
5. 성원보고
6. (가칭)사단법인 대한족기협회총재임명회의록통과
7. 회무보고
8. 1968년도 결산승인 및 감사보고
9. 1969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승인
10. 정관개정(추인)
11. 임원개선
12. 기타
13. 개회

1. 개최 특지일자 1969년 4월 24일
2. 개최 일자 1969년 5월 1일
3. 개최 장소 신문회관 회의실
4. 출석회원수 총 151명
 재적 151명
 출석 107명
5. 사회자 성명 부회장 장기태
6. 진행총무이사 유지영
7. 개회선언 (오후 1시 개회)
8. 국민의례
9. 회장인사

이 원만 회장의 유고불참으로 장기태 부회장이 이제는
사단법인체인 만큼 전보다 적극적인 회원의 참여로 협회
발전에 기여해달라는 오지의 인사가 있었음.

10. 내빈축사
 배영호 국회사무총장을 대리하여 권호섭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이 축사를 함.

11. 성원보고
 유지영 총무이사로 부터 재적회원 151명 중 107명即 출석
 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

12. (가칭)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창립총회회의록 통과

유지영 총무이사로 부터 전차 총회회의록 낭독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사회가 이견여부를 회원에게 문의한바 전원 이의
없다 하여 통과됨

13. 회무보고

안인영 이사장으로 부터 별지(제 1회임시총회자료 참조)와 같이
회무보고를 하다.

14. 1968년도 결산승인 및 감사보고

유지영 총무이사로부터 1968년도 결산(별지)을 보고하고 고지
함 감사로 부터 감사보고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사회가 이의여부
를 회원에게 문의한바 전원 이의없다 하여 통과됨.

15. 1969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승인

유지영 총무이사로 부터 1969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승인
에 있어서는 전차 사단법인창립총회에서 심의 확정된 것이나까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보고가 있었음.

이에 대해서 이동임 회원이 1969년도 세입항의 이업금과 1968년도
결산항의 현금잔고가 맞지 않는데 대한 주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유지영 총무이사가 그것은 감사업자와 회계년도 변경등
으로 인한 문제로써 생긴 것 아니까 감독청에서 허가된 대로 이해
해 달라는 오지의 답변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의사진행으로 김백곤 회원께서 이 예산안을 회계

년도 변경으로 금년 내일에 결산을 해야되니까 그때에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집행부에 상정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자는
동의에 대하여 전원 찬성하여 통과됨.

16. 정관 개정 (추인)

유지영 총무이사로 부터 전차 사단법인총회에서 심의통과
제기준 정관을 사단법인의 인가를 받기위해서 문공부준칙에 맞도록
개정한 정관(제 1회 임시총회자료 참조)을 낭독함.
이에 대하여 사회가 이의여부를 전회원에게 주의한바 이의없다 하여
원안대로 통과됨.

17. 임원 개선

사회가 회장, 부회장을 예외한 임원(전이사진)이 사표를 제출하였
으니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좋겠느냐는 처리방안에 대하여
김백곤 회원으로부터 전이사진은 사단법인인사에 공로가 많고 또
법원에 등기되어 되었으니 사표를 반려하고 전원유임시키자는 의견
이 있었고 김진기 회원으로부터 안인영 이사장은 신병때문에
도의적으로 더 일을 맡기수 없으니 전원의 사표를 수리하되 이사장
만 개선하고 나머지 이파는 유임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자는 동의를
함. 이에 대하여 사회가 표결에 대한바 이의없다하므로 전원
사표를 수리함.

1. 이사장 선출

사회가 이사장선출방법을 질의한바 황인하회원으로부터 구두로
천으로 정원도회원을 이사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전회원이 이의없다 하여 사회는 정원도회원이 이사장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함.

2. 이사, 감사선출

사회가 이사, 감사선출에 대하여 질의하바 양철재회원으로부터
이사, 감사선출은 신임이사장과 회장단이 상의해서 발표하라는 동의에
대하여 전회원 이의없다 하므로 사회는 동의대로 통과된것을 선포
하고 정회를 선포함.

(오후 2 시 20분 회의 중지)

(오후 2 시 30분 계속 개회)

사회로부터 속개를 선어하고 회장단과 신임이사장이 겸임한 명단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서 이의유무를 본의한바 다수회원이 이의없다
하므로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음을 선언함.

새로 선출된 임원을 다음과 같다.

이사장	정원도
이사	유지영
"	이용수
"	전해성

이	사	이	강	현
"	한	봉	영	
"	김	영	선	
"	한	종	열	
"	송	박	문	
"	한	동	춘	
"	양	원	용	
"	최	용	식	
감	사	김	인	영
"	고	재	희	

18. 기타 사항

신임임원의 임기에 대하여 69년 말까지라는 김 경 만회원의 주장과 70년 말까지라는 김 전 기회원의 주장이 양립하였으나 다른 회원이 70년 말까지가 옳다고 하여 신임임원의 임기는 70년 말까지로 결정함. 다음 전 흥 복 회원이 동아일보사 광고판에 관계도 없는 국회속 기장의 명칭을 내걸고 개인교수를 하다는 것은 속기인의 양식에 관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발언이 있었고 또 양철재 회원으로부터 첫째 속기사의 대우 개선문제로 수당을 좀 더 세분

하여 연구수당 기술수당등 개선이 되수 있는 방안을 신 임원진에서
연구해 달라는 부탁과

둘째 남상천 씨의 사유 비단체에 대해서 우리 협회로서는 말씀
내지 뚝심시킬것이냐 그냥내버려둘것이냐 우리방향으로 끌려오도록
유도할것이냐 이 세가지 문제를 신 이사진에서 연구해서 대응책을
마련 하도록 강력히 건의하고

세째 협회가 사단법인으로 된 이상 속기인건체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기관이나 국영기업체에 인사장을 보내달라는 건의가 있었음.
다음. 김영춘 회원으로부터 속기무로 강습을 어떤 특경법식에서만
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또 회원의 회비가 얼마되지 않는데 이런
장소를 빌린것은 너무 과대지출이 아닌가 하는 발언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안인영 이사장이 답변으로서 속기무로 강습은 신청하는 법식
에 한해서 평등하게 하고 있으나 현사건으로 보아 학원을 가진 법식
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으니 이해해 주기바라고 총회장소는 사단법인체
가 특별위원회를 빌려서 한다고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면에서 고민한
점이 있어서 이 장소를 빌렸다는 해명이 있었음.

또 한봉영 회원으로부터 안인영 이사장과 사단법인설립에 종로 가
많은 임원에 대하여 표창을 하되 그 인도와 방법은 신임이사회에서 결정
하자는 움직임에 대해 건원이의가 있어 만장일치로 가결됨.

그러므로 신임 정 원 도이사장의 취임인사와 안 인 영건 이사장의
퇴임인사가 있은 다음 기타 사항을 종결함.

19. 개 회

사회가 모든 부의 안건이 그를 낚으므로 개회를 선언함.

(오후 3 시 10분 산회)

유 첨 : 1 계 1 회 임시총회자료 ~~별~~부

2 감사보고서

第一回 臨時總會
會議錄

1969. 5. 1.

(於新聞會館).

法人 大韓速記協會

社團
法人 大韓速記協會

第一回臨時總會 會議錄

會 應

1. 開 會
2. 國 民 儀 禮
3. 會 長 人 士
4. 來 賓 詞 辞
5. 代 言 報 告
6. (假稱)社團法人大韓速記協會創立總會會議錄通過
7. 會 事 報 告
8. 1968 年 度 決 算 承 認 及 監 查 報 告
9. 1969 年 度 事 業 計 劃 書 及 施 算 算 承 認
10. 是 款 改 正 (追 認)
11. 任 員 交 送
12. 其 他
13. 閉 會

1. 用催通知日字 1969年4月24日
2. 用催日字 1969年5月1日
3. 用催場所 新聞會館會議室
4. 出席會員數 在籍 151人
出席 101人
5. 司会者姓名 副会长 張基泰
6. 進行 總務理事 柳智永
7. 用會宣言 (午10時用會)
柳智永總務理事는 午10時用會宣言을 하다.
8. 國民儀禮
9. 會長人事
李源汀會長이 有故不參^{이유로 참석하지 않음} 張基泰副會長이
이래는 社團法人体也 만큼 前보다 積極的이
會員의 參與를 協會發展에 寄託하니 잘라는
要旨의 人事에 以次^{依次}。
10. 來賓祝辭
裴泳鎬國會事務總長이 代理하여 檀香園
會事務處議事向^向 言^한 祝辭를 했

11. 成員報告

柳智水總務理事로부터 在籍會員 151名中

107名이 出席하여 成員의 되었음을 報告함

12. (依循) 社團法人大韓產記協會創立總會會議錄通報

柳智水總務理事로부터 前次總會會議錄

朗讀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회수가 署認与否를

회원에게 向設한바 全員 署認했다 하여

通過됨

13. 會務報告

安仁榮理事長으로부터 別紙(第1回臨時總會

資料参照)와 같이 會務報告를 하여

14. 1968年度決算承認 및 監查報告

柳智水總務理事로부터 1968年度決算(別紙)

을 敷는하고 高在欽監事로부터 監事報告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회수가 署認与否를

회원에게 向設한바 全員 署認했다 하여

通過됨

15. 1969年度事業計劃書 및予算案承認

(속) 1969年 4月 21日

柳智水總務理事로 부터 1969年度事業計劃書 및
予算案承認에 있어서 前次 社團法人創立總會에
서 審議又確定된것이니까 그대로通過시켜 달라는
報文가 있음을.

이에 대해서 李東一會員이 1969年度歲入項의
移越金과 1968年度決算項의 理賃金殘高가 맞지
않는에 대한 質疑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答弁
으로서 柳智水總務理事가 그것은 監查日數와
會計年度變更等으로 因한 문제로서 생긴것이니까
監督處에서 허락된 대로 理解解釋해 달라는 奏旨의
答弁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訂正進行으로 全石坤會員께서
이予算案은 會計年度變更으로 今年末日에 決
算을 해야 되니까 그때에는 이런 疑點가
없도록 執行部에 警醒을促求하고 原則대로
承認해 주자는動議에 대하여 全員賛成
하여 通過됨.

16. 改正(合認)

柳智永總務理事로 부터 前次 社團法人創立總會에서
審議通過시켜 준 定款은 社團法人的 認可를 받기
위해서 文云部準則에 맞도록 改正한 定款(第1回
臨時總會資料参照)을 阅讀함.

이에 대하여 회수가 署設事項을 全會員에게
白叙한바 署設事項과 하여 原旨대로 通過됨.

17. 住員改選

회사가 會長·副會長을 除外한 住員(全理事陣)
手續表를 提出하였으니 어떻게 處理하겠는가의
중간으로 處理方案에 대하여
全百印會員으로 부터 謂理事陣은 社團法人認
可에 功勞가 많고 또 法院에 登記까지 되었으니
手續表를 退去하고 全員 離任시키자는 意見이 있었고
全鎮基會員으로 부터 姜仁榮理事長은 身病
때문에 道義的으로 더 일을 맡길 수 없어 全員의
手續表를 處理하되 理事陣만 改選하고 나머지
理事는 留任하는 方法으로 處理하자고 勸說를 함.

이에 대하여 회수가 表決에 대한바 署設事項과

하므로 全員皆衰를 度理합。

1. 理事長選出

기회가 理事長選出方法을 問한 한바 黃寅河會員
으로 부터 口頭呼請으로 鄭源道會員을 理事長
으로 選擧하자는 動議에 대하여 全會員이異議
없자 하여 今之는 鄭源道會員이 理事長으로
選出된것을 宣布함。

2. 理事·監事選出

기회가 理事·監事選出에 대하여 問한 한바
~~楊淑在~~ 有聲在會員으로 부터 理事選出은 新任理事長과
会长团이 相次래서 登表하라는 動議에 대하여
全會員異議없자 例으로 今之는 動議대로 通過
된것을 宣布하고 例會를 宣布함

(午後 2時 20分 会议中止)

(午後 2時 30分 繼續開会)

기회로 부터 繼開會를 宣言하고 会长團과 韓江
理事長이 擇任한 名單을 登表하고 이에 대해서
異議有聲을 問한 바 多數會員이 异議없자

하므로 满場一致로 選出되 었음을 宣言합니다.

이로 選出된 任員은 다음과 같다.

理事長 鄭 源道

理事 柳 智永

李 龍洙

全 海淺

李 康賢

韓 孝永

金 永善

韓 鍾烈

宋 傅文

韓 東春

梁 源範

崔 競植

監事 金 仁寧

高 在欽

18. 其他事項

新任 任員의 任期에 대하여 69年末까지 라는 全

(속)

국 회 사 무처

散行會員의 主張과 70年末까지라는 全體基會員의
主張이 同じ하였으나 多數會員이 70年末까지가 옳다
고 하여 新任住員의 任期는 70年末까지로 決定함.

다음 因此舊會員이 東亞日報廣告欄에 官職도 없는
國會遠記長의 名稱을 내걸고 他人敘援을 한다는 것은
遠記人의 良誼에 관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는 이런
不名譽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誓言이 있었고.

또 楊澈在會員으로 부터 첫째 遠記士의 待遇改
善 문제로 手當을 좀 더 紹介하여 研究手當 技術手當等
改善이 될 수 있는 方案을 新任員陣에서 研究해
달라는 付託과

둘째 남상천民의 似而非團體에 대해서 우리協會
로서는 撫敎乃至 默殺시킬것이나 그양 내버려 둘것
이나 우리如何으로 끝^이오도록 誇尊할것이나 이
세 가지 문제를 新理事陣에서 研究해서 处置策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建議하고

셋째 協會가 社團法人으로 된 以上 遠記人 全體
의 利益을 위해서 政府機關이나 國營企事業에 人事

기자회 보내 알라운 헌법가 있었음.

다음 金永春 회원으로 부터 速記會料請習을 어
떤 亂同法式에서만 하는 方式을 附揚하고 또
公員의 公費가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런 異常를
일한 것은 너무 過大支出이 아님か 하는 証명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安仁宗 理事長이 答覆으로서
速記會料請習은 申請하는 法式에限制해서 平等
하게 하고 있으나 理事會으로 보아 學院을 가진
法式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지 理解해 주기 바라고
總會場所는 社團法人體가 特別委員會를 빌려서
한다고 하는 문제는 여러가지 중에서 困難한 틱이
있어서 이 書面을 빌렸다는 解明이 있었음.
또 朝鮮水會員으로 부터 安仁宗 理事長과
社團法人設立에 대비가 많은 住處에 대하여
表意를 하되 그 人選과 方法은 鄭任理事會에서
決定하자니 鄭任理事會에 대해 全員異議가
없어 滿場一致로 可決됨.

끝으로 鄭任 理事長의 京在住人事와

尹仁常理事長의 退任人事에 以는 다른 其他
事項을 終結함。

19. 例會

例會外 오는附註又拿件이 즐거워요 例會는
宣言함。

(午後 3時 10分 散会)

有添 : 1. 第1回 監察時總合資料一部
2. 監查報告書.

第一回臨時總會資料

日時：1969. 5. 1. (木) 12:00

場所：新聞會館 大講堂

目 次

1. 會 順
2. 會務報告
3. 決算書
4. 69年度 事業計劃及 準算書
5.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註冊
6. 會規

社團
法人 大韓速記協會

第1回臨時總會會順

1. 開 會
2. 國民儀禮
3. 會長人事
4. 來賓祝辭
5. 成員報告
6. (假稱)社田法人大韓速記場會創立總會會議錄通過
7. 會務報告
8. 1968年度決算承認及盈查報告
9. 1969年度事業計劃書及予算案承認
10. 定款改正(追認)
11. 任員改選
12. 其 他
13. 閉 會

會務報告

꽃생바람에도 꾹꿋히 망울쳐 피어나는 꽃과 같이
1968年4月27日 第2回定期總會 以後 10次에
亘한 理事会와 數次의 懇談會를 거쳐 間斷歟亡 試
鍊과 難澁한 諸問題들을 헤쳐나온 지난 一年間의
協會運營概況을 簡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会報發刊에 대하여

任員과 會員間의 紐帶를 密接시 하고 協會의
運營實態를 工時 工時 全會員이 周知함으로써 종
은 意見의 提示와 參與意識을 高歎하는 뜻에서
隨時 發行하노 会報制度를 設置하여 3回까지 配
付하겠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더욱 活用될 것으로
믿습니다.

2. 速記技能檢定에 대하여

速記人の 公信力과 資質向上을 위한 速記技能檢

~4~

定 実施는 成案은 거의 되었으나 法人設立 認可後 実施함이 權威와 公信力を 높인다는 見地에서 工 実施를 法人設立 認可後 끝 施行予定으로 保留해 둘습니다.

3. 日本國速記界視察報告書發刊에 대하여

去年 國會 速記第1席長이신 金鎮基회원의 日本速記界視察에서 얻어진 貴重한 資料를 冊子로 엮어 회원 여러분의 參考에 供하고자 “日本國速記界視察報告書”를 当場會名儀로 發刊 配布하여 드렸습니다. 이는 諸君 參考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 速記無料講習에 대하여

速記文化의 宣傳、普及、社會各層의 認識度의 提揚、速記人口의 增大 등을 위한 速記無料講習会는 本場會主催 朝鮮日報社 後援으로 夏季는 1968年 8月2日 ~ 8月20日까지 451名의 受講生을

接受하였고, 冬季에 1969年 1月 13日 ~ 2月 1
일까지 833名의 受講生을 接受하여 각각 20
日間의 講義를 通해 새로운 速記의 「이메이지」
를 扶植하였고, 年年 回를 거듭할수록 受講希望者
가 激增하고 있음은 學生이나 一般人们的 速記에
대한 認識이 提高되어가는 証左로서 同慶해 마지
않습니다.

5. 速記工技能検定実施에 대하여

速記界의 唯一한 法人体라고 自處하는 韓國速記教
育協會의 妖謀한 試圖로서 剽竊되어 勞動厅에 提
出된 全速記人の 速記技能検定実施를 委嘱받고자
한 “速記工技能検定実施”에 대해서는 即刻 当場
会主 “速記工”이란 用語 自体부터 不當함과
韓國速記教育協會가 敢히 全速記人の 技能検定을
하겠다는 것은 言語道斷임과 現速記界的 実情、當
協會의 構成、性格 등을 考慮 建議文으로 反駁하였다.

고 그後 数次에 亘해 当路 実務者들과 面談 이
의 實施를 強力히 阻止하매 正 担當局長을 面談.
具體的인 内容을 說明하여 一旦 保留하겠노라고
確約를 얻었읍니다.

6. 法人設立認可에 대하여

去年부터 推進되어온 社團法人 設立認可는 去年
6月4日 假藉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創立總會以後
곧 書類具備하여 去年 8月21日 文化公報部에 申
請한 後, 定款上의 問題項(主로 事業目的의 變更·
追加)의 改正을 비롯 10數次에 걸친 書類의 补
完(書類의 追加·訂正) 도는 补完書類의 收集의
遲遲不振, 既設立된 (1967年1月30日 社團法人認可)
韓國速記教育協會의 骷骨的인 認可妨害(類似團體의
認可不可를 主로 強調) 이에 대한 文公部 当路
者에 대한 理解促求등으로 어려운 고비를 여러차
례 겪었으나 會長님을 비롯하여 張炯淳國會議長

旨、文公委 任哲淳專門委員旨、樞密院國會議事局長旨、

劉龍珪國會速記課長旨 等 当協會를 恒常 이끌어
주시고 밀어주시는 여러 人士의 積極的인 呼應과
激励、도움은 勿論 全會員의 숨은 聲援과 任員의
努力으로, 드디어 지난 4月 14日 文公部認可
138號로서 法人設立認可를 得하고 이어 4月
15日 法院에 登記手續을 하여 4月 18日 登記
番號 1509號로서 登記를 畢하였습니다.

이에 全會員과 더불어 慶賀해 마지않고 反面 이
제부터는 過去의、不美로운 情性을 削減하여 이
나라 速記界의 真正한 밝은 燈 불이 될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를 이루하기에 身의 情熱을 傾注하
야 할 一大使命感과 紮持를 무겁게 느끼며 無窮
한 發展 있기를 빌 따름입니다.

7. 政府補助金 獲得에 대하여

벅찬 가슴의 鼓動을 안고 發足한 当協會의 運

~ ~

嘗을 좀더 次元이 높은 見地에서 일고 나가기 위한 潤滑剤로서, 不得不 自体予算만으로서는 難處한 現實에 비추어 政府補助金의 獲得이 切実히 要請되어 来年度 予算에서의 補助金 獲得을 위해 文化公報部 実務者와 相議한 結果 이미 来年度 予算是 一次查定이 끝나서 上向의인 予算의 再調整은 不可能하니 長·次官을 通한 下向의인 予算의 再調整의 결안이 남아 있다는 것으로 會長님을 尋訪 現況을 說明드리고 積極的인 協助를 要望드리고 앞으로도 繼続 關係要路에 折衝 最大 ...限의 補助金獲得을 위해 最善을 다 해야 할것임니다.

8. 名譽會員推戴에 대하여

上述한 바와 같은 巨創한 事業遂行을 陰陽二豆 뒷받침해 주실 人士로 名譽회장에 李孝祥國會議長님, 顧問에 張河淳國會副議長님, 柳珍山議員님,

獲沐鶴國會事務總長님, 國會文公委 任哲淳專門委員님.

權孝燮 國會議事局長님, 劉龍珪國會速記課長님을 推戴
하였습니다.

이에 앞으로 協會運營에 더욱 밝은 빛이 되어
주실 것을 믿어 마지 않습니다.

以上으로서 간단히 會務報告를 마치고 끝으로 本
協会의 發展育成을 위해서는 全會員 한사람 한사람
이 速記界의 소금의 役割을 다 해서 하나로 둘러
一糾不亂한 隊伍 밑에 如何한 隘路와 障碍라도 서슴
없이 헤쳐나갈 体质의 改善과 協会 없이 모든 것이
이룩될 수 없다는 信念과 覺悟로서 먼 훗날을 바
라보며 整然한 발걸음의 鼓動이 메아리 칠때 비로
소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의 真面目이 燥然히 빛날
것입니다.

그리므로 变함 없는 여러 會員의 私心 없는 參與

의識을 불러 일으키어 한알의 거자씨가 되어 주
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아낌없는叱正이 있기를
바랍니다.

1969年 5月 1日

理事長 安 仁 榮

1968年度決算書

(68.4.4~69.3.31)

收 入			
款	項	金額	備 考
基本收入	入会費	900	
	会 費	95,000	
事業收入	材料講習	190,300	
	贊助金	30,000	
雜 收 入	決算利息收入	1,509	銀行預入利息
移 越 金	前年度移越金	95,808	
	計	413,517	

支 出			
款	項	金額	備 考
會議費	定期總會費	6,500	
	理事會費	9,120	
辦公費	辦公費	9,780	
事業費	材料講習	97,950	
	印刷費	16,070	
	記念品代	56,700	
預備費	預備費	44,355	活動費 8,725 日常費 2,450) 包含
	計	240,475	

現金殘高 173,042

~11~

1969년도 사업계획서

당협회의 1969년도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전년도의 성과를 자율삼아 실현성이 있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협회의 발전을 기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여 전년도의 5개(계속) 사업에 새로 속기전시회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6개사업계획서를 제출함.

1. 법식연구위원회 설치 (계속)
2. 무료공개속기강습회 개최 (계속)
3. 회지 발간 (계속)
4. 속기경기대회 (계속)
5. 자격검정시험 (계속)
6. 속기전시회 (신설)

기본 계획

1. 법식연구위원회 설치 (계속)

(1) 목적 : 시대가 변천되고 발전됨에 따라 언어의 속도가 빨라지므로 속기문자의 개량은

우리 속기계에 주어진 큰 파제이으로 이 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 (2) 구 성 : 협회 가입법식중에서 각법식에 1인 이상의 연구위원을 위촉하고 위원장 1인과 잔사 1인을 둔다.
- (3) 주 관 : 연구위원회
- (4) 연구방법 : 이는 구성된 연구회에서 정한다.

2. 무료공개속기강습회 개최 (계속)

- (1) 목 적 : 단기간의 무료공개강습을 실시하여 속기학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속기의 대중화를 도모하고 속기인구의 증대에 목적을 둠.
- (2) 기간 및 회수
- 가. 제6회 1969년 7월~8월 사이 (3주간)
- 나. 제7회 1970년 1월~2월 사이 (3주간)
- (3) 주 관 : 협회 선전부
- (4) 방 법 : 협회 선전부의 주관으로 모든 경비를 지출하고 강습기간중의 모든 업무는 협회 선전부에서 관장한다.

(5) 장사초빙 : 무료강습에서 채택된 법식에서 초빙한다.

세부안은 선전부에서 별도 작성함.

3. 회지 발간 (속기협회 월보) (계속)

(1) 목적 : 종래의 회지 발간방법을 폐지하고 속기계를 월간으로 발간하여 속기계의 동향과 회원들의 실태를 신속히 회원들에게 알리고 국회를 중심으로 의원들과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기사를 실으므로서 (속기를 통하여) 속기에 대한 P. R. 과 속기의 수요처 개발에 이바지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협회의 기관지가 되게 운영을 하자 함.

(2) 주관 : 선전부

(3) 발간에 대한 세부계획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4. 속기경기대회 (계속)

(1) 목적 : 속기에 대한 일반의 올바른 인식과 속기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함.

(2) 방법 : 개인경기와 단체경기

(3) 개최일시 : 1970년 2월중

(4) 주관 : 협회 사업부

세부계획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5. 자격검정시험

(1) 목적 : 협회의 자격심사 및 기능검정 규정에 의한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속기의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시키는데 있다.

(2) 개최일시 : 가. 1969년 9월중

나. 1970년 3월중

(3) 주관 : 자격심사위원회

세부계획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6. 속기전시회

(1) 목적 : 속기학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전시함으로서 속기에 대한 일반의 인식과 자체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간 : 1969년 7월중 1주일

(3) 주관 : 사업부·선전부 세부계획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1969년도 수지예산(안)

수 입		지 출	
회비	120,000	회비	63,200
입회비	6,000	경상비	36,000
교재대수입	240,000	무료강습비	191,000
광고수입	360,000	발간비	440,000
찬조비	120,000	축기경기대회비	39,000
검정료	56,000	검정시험비	62,000
전시회수입	300,000	축기전시회비	300,000
이월금	50,000	관공비	36,000
		예비비	84,800
계	1,252,000	계	1,252,000

~17~

수입지부

관	항	목	수입액	산 출 균 거
기본 수입			126,000	원
	월 회비		120,000	$10,000 \text{ 원} \times 12 \text{ 월} = 120,000$
	입회비		6,000	$3,000 \text{ 원} \times 20 \text{ 명} = 6,000$
사업수입			1,076,000	
	무료 강좌 교재 대		240,000	$300 \text{ 원} \times 400 \text{ 명} \times 2 \text{ 회} = 240,000$
	발간 수입		480,000	
	광고수입		360,000	$30,000 \text{ 원} \times 12 \text{ 회} = 360,000$
	찬조비		120,000	$10,000 \text{ 원} \times 12 \text{ 회} = 120,000$
	검정수험료		56,000	1급 ~ 3급 $300 \text{ 원} \times 60 \text{ 명} \times 2 \text{ 회} = 36,000$ 4급 ~ 5급 $200 \text{ 원} \times 50 \text{ 명} \times 2 \text{ 회} = 20,000$
	전시회수입		300,000	전시회 찬조 300,000 원
이월액			50,000	
	전년도 이월액		50,000	
합계			1,252,000	

지출지부

관	항	목	금액	산 출 근 거
회의비			63,200	원
	정기총회		20,000	
	이사회		18,000	$3,000 \text{ 원} \times 6 \text{ 회} = 18,000$
	연구위원회		25,200	$150 \text{ 원} \times 7 \text{ 일} \times 2 \text{ 회} = 25,200$
경상비			36,000	
	물품구입비		24,000	$2,000 \text{ 원} \times 12 \text{ 월} = 24,000$
	통신비		12,000	$1,000 \text{ 원} \times 12 \text{ 월} = 12,000$
사업비			1,032,000	
	무료강습비		191,000	
	임대료		88,000	$1,700 \text{ 원} \times 20 \text{ 월} \times 2 \text{ 회} = 68,000$
	광고료		70,000	$35,000 \text{ 원} \times 2 \text{ 회} = 70,000$
	용지 및 인쇄비		7,000	$3,500 \text{ 원} \times 2 \text{ 회} = 7,000$
	교재료		11,000	$5,500 \text{ 원} \times 2 \text{ 회} = 11,000$
	강사료		28,000	$3,500 \text{ 원} \times 4 \text{ 일} \times 2 \text{ 회} = 28,000$
	잡비		7,000	$3,500 \text{ 원} \times 2 \text{ 회} = 7,000$
발간비			440,000	다보로이드판 4페이지

관	항	목	금액	산 출 근 거
		인쇄비	220,000	10회 1,000부 $22,000\text{원} \times 10\text{회} = 220,000$
		편집비	220,000	$22,000\text{원} \times 10\text{회} = 220,000$
	축기정기대회		39,000	
		임대료	2,500	$2,500\text{원} \times 1\text{회} = 2,500$
		용지 및 인쇄비	7,000	$7,000\text{원} \times 1\text{회} = 7,000$
		광고비	13,000	$13,000\text{원} \times 1\text{회} = 13,000$
		저술비	11,000	$11,000\text{원} \times 1\text{회} = 11,000$
		잡비	5,500	
	자격검정시험		62,000	
		임대료	5,000	$2,500\text{원} \times 2\text{회} = 5,000$
		용지 및 인쇄비	13,000	$6,500\text{원} \times 2\text{회} = 13,000$
		접대비	13,000	$6,500\text{원} \times 2\text{회} = 13,000$
		채권비	5,000	$2,500\text{원} \times 2\text{회} = 5,000$
		광고비	26,000	$13,000\text{원} \times 2\text{회} = 26,000$
	축기전시회		300,000	
		임대료	49,000	$2,000\text{원} \times 7\text{월} = 49,000$

재용 토 품 및 비	60,000	원도지, 포스티 칼라 합판 외 필요한 것
인쇄비	40,000	초첨장(등사, 광봉 500매) 프로그램(등사 20페지 500매)
사진비	21,000	현상료, 확대료
광고료	26,000	13,000원 × 2회 = 26,000
인건비	74,000	미술, 실내장치, 특공인부
거마 및 집대비	20,000	
잡비	10,000	
관공비	36,000	3,000원 × 12월 = 36,000
예비비	84,000	
합계	1,252,000	

사단 법인 대한속기협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이하 "본 협회"라 한다) 라 칭한다.

제 2 조(소재지) "본 협회"의 본부는 서울특별
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 조(목적) "본 협회"는 속기인의 총집결체로
서 속기문화의 연구발전 및 보급과 속기인의
자질향상, 상호협력,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
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속기문화 연구에 관한 사항
2. 속기문화 보급에 관한 사항
3. 사회 각계의 속기분야에 관한 사항
4. 속기문화의 선전 출판에 관한 사항
5. 속기기능 검정에 관한 사항

6. 외국속기문화의 교류에 관한 사항
7. 언론 보도분야에 있어서의 속기애 관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자로 한다.

1. (명예회원) “본 협회”의 목적과 사업을 이해하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하는 인사로 이사회 의 결의로서 명예회원에 추대된 자
2. (정회원) “본 협회”의 회칙에 의한 자격심 사에 합격된 자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은 회규로써 정한다)
3. (준회원) “본 협회”에 가입된 속기법식을 습득한 자나 습득중에 있는 자중 이사회의 결의로서 준회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제 6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명예회원) “본 협회” 운영의 차운에 응

할 수 있다.

2. (정회원)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를 평등하게 행사하며
경관 또는 총회의 결의사항 준수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준회원) 총회에서 의사표시만을 할 수 있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 협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제 9 조 (징계) (1) 회원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 협회”의 사업을 방해할 때
3.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때

(2) 전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경적

3. 자격정지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본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장 1인
4. 이사 12인(이내)
5. 감사 2인

제 11 조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전항의 임원은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 12 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공히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본 협회”의 업무를 통리한다.

2.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3. (이사장)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여 “본

협회”의 사무를 통괄한다.

제 14조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5조 (이사) 이사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 16조 (감사)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협회”의 재산사항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전 2호의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장 총 회

제 17조 (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결의
기관이며 정회원과 준회원으로서 구성한다.

제 18 조 (소집)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임시총회는 정회원의 3분기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이사회 의 결의로서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19 조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 20 조 (정족수) (1) 총회는 제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 한다.

(2) 전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1조 (구성) 이사회는 "본협회"의 집행 기관으로서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나 재적 이사 4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총회후 최초의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23조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 심의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업무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5. 정관 개정안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회원 가입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 사항.

제24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장 집행부서

제25조 (부서) 이사회에 다음의 부서를 두고 “부” “회”에 부장 위원장 1인을 둔다.

1. 총무부
2. 선전부
3. 사업부
4. 연구 위원회
5. 자격 심사 위원회

제26조 (각부서의 업무 분담) 각부서의 업무 분담은 회규로서 정한다.

제27조 (각부장 및 위원장의 선출 방법) 각부장 및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8장 재정

제28조 (재정) (1) "본 협회"의 재산은 이를 기
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은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3) 기본재산은 임대 차분 기타 사유를 설정
하거나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문화 공
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세입등) "본 협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1. 회비

2. 보조금

3. 찬조금

4. 기타수입

제30조 (회계감사) 감사는 "본 협회"의 회계기
관한 사항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31조 (회계년도) "본 협회"의 회계년도는 정부
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9장 사무국

제32조 (설치)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33조 (직원) 사무국에 국장 1인과 직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제34조 (사무국장 등) ① 사무국장은 이사회와 문화 공부부장관의 수임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 ③ 사무국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0장 보 칙

제35조 (해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잔액재산) "본 협회" 가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 재산은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분 협회" 와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37조(정관변경) (1) "본 협회" 의 정관 개정은 이사회 결의나 정회원 20명 이상의 성명 날인을 얻어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2) 정관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8조(규칙)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 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 협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1) "본 협회"는 대한속기협회 해산과 더불어 일체의 그 업무를 인수한다.

(2) (경과조치) (1)이 전관은 사단법인 대한속기 협회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단법인의 혁거를 얻으므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창립총회에서 보고 접수된 자는 "본 협회"의 최초의 정회원이 된다.

위와 같이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전관을 작성 함.

1969년 월 일

(설립당초의 '본 협회'의 심원은 다음과 같다)

직위	임기	성명	주소
회장	2년	이 청 만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가 61의 8
부회장	"	장 기 태	영등포구 방화동 247의 80
"	"	이 동 근	서대문구 응암동 402의 48
이사장	"	안 인 영	영등포구 가리봉동 2의 105
이·사	"	유 지 영	구로동 510의 4

		이 용 수	성북구 돈암동 산 48의 59
		전 해 성	영등포구 신도림동 106의 4
		이 강 현	동대문구 용두동 65
		한 봉 영	성북구 동선동 1가 1의 5
		김 영 선	성북구 옥수동 453
		송 박 문	영등포구 선경동 147
		한 동 춘	서대문구 불광동 280의 454
		양 원 용	성북구 삼양동 2동 711
		최 용 식	마포구 아현동 459-27
감 사		한 종 이 영	동대문구 천정동 123
		김 인 영	동대문구 담십리 1동 132
		고 재 흥	성북구 창문동 315의 29

회 규

제 1 호 사무집행규정

제 1 조 이 회규는 대원 속기 협회의 원활한 사무집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총회에서 결의된 사무집행은 이사회에서 처리되며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3 조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무집행은 각부장이 처리되며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단. 이사장은 결재한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조 본회의 본부 설치에 관하여는 총회 결의에 의하고 기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집행되어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5 조 회원의 자격심사는 따로 자격심사규정에 의한다.

제 6 조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일 1개월 전에 회원 각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소집일시

(2) 소집장소

(3) 소집목적

제 7 조 예산의 편성은 각부장이 제출하되 사업부
장이 이를 종합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조 예산의 절정은 각부장의 신청을 받아 총무
부장이 처리하되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
다.

제 9 조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본회의 수입금은
각부장이 총무부장에게 납입하고 총무부장은 이
사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 10 조 감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장의 동의를 얻어 사무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각부는 감사에 응
하여야 한다.

제 11 조 사무집행에 있어서 각부간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이를 결정하고 다음 소집되
는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2 조 기방회원이 총회출석을 위임하고자 할때에
는 별표 제 1 호 양식의 위임장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 각종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정기총회로부터
기산하여 2년후의 정기 총회까지로 한다.
단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창립
총회후 다음 정기총회까지를 1년으로 간주한다.

제 2 호 명예회원에 관한 규정

제 1 조 정관 제 5 조 제 1 항의 명예회원은 다음과
같이 세분 규정한다.

1. 명예회장
2. 고문
3. 지도위원

제 3 호 각부서의 업무분담에 관한 규정

제 1 조 정관 제 26 조의 각부서의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1 총무부

- (1) 입장, 문서, 접기, 기타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 (2) 서무, 회계, 연락에 관한 사항
- (3) 조직에 관한 사항
- (4) 타부 위원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항

2 선전부

- (1) 선전, 출판에 관한 사항
- (2) 속기문과 보급에 관한 사항

3 사업부

- (1) 회원 취업 활성 및 부리증진에 관한 사항
- (2) 본회 할장을 위한 사업의 실무사항

4 연구위원회

- (1) 속기문화 연구에 관한 사항

5 가격심사위원회

- (1) 회원정계 및 가격심사에 관한 사항
- (2) 기능경정에 관한 사항

단, 연구위원회와 가격심사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4호 임회금과 회비에 관한 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전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임회금과 회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임회금은 정회원 300 원 이상 준회원
100 원 이상으로 한다.

제 3 조 회비는 정회원 월 100 원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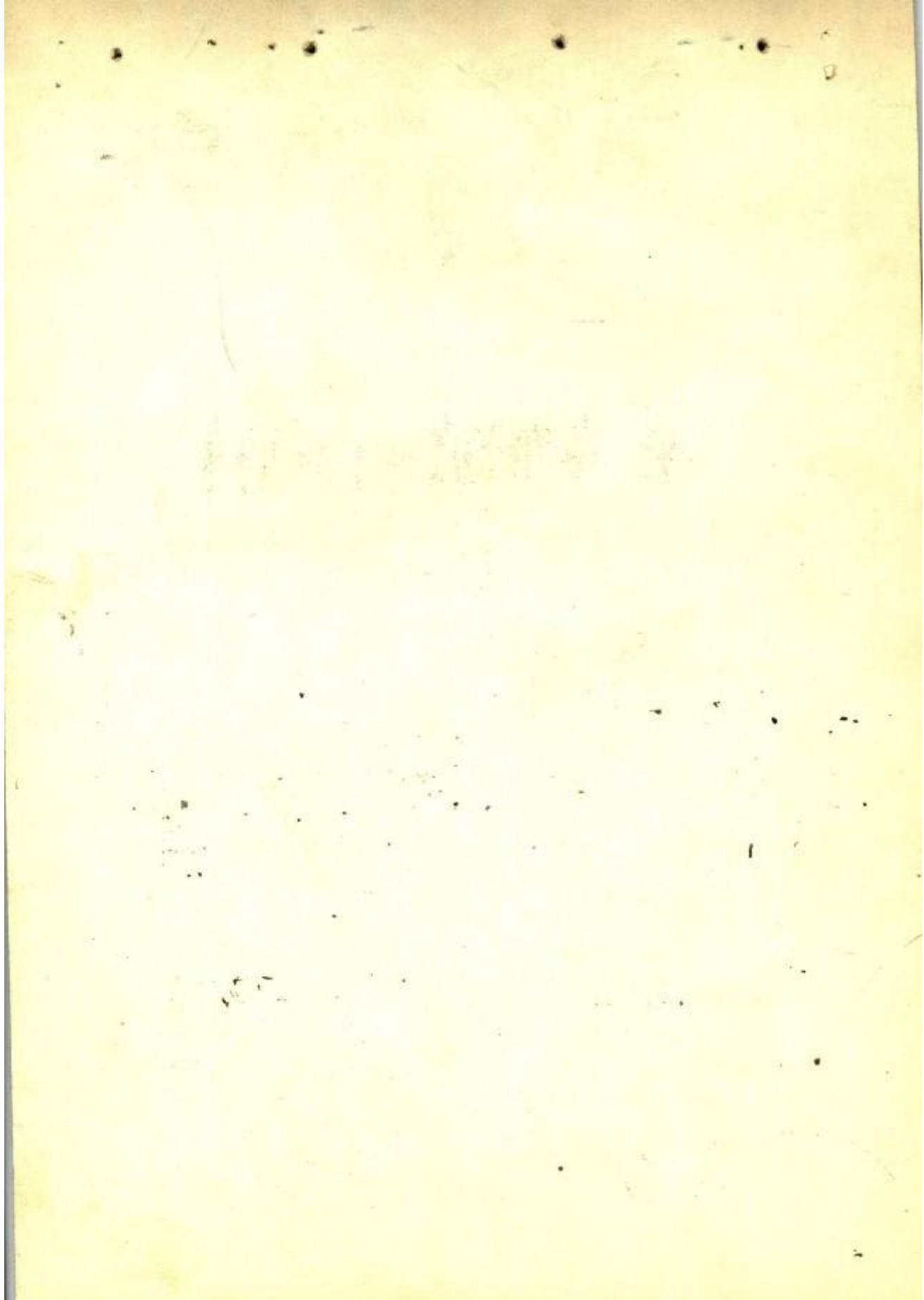
제 4 조 임회금은 임회와 동시에 납입하고 회비는
매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조 회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회원에 대하여
여는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정지시킬 수 있다.

제 6 조 본회·사업부를 통한 위탁숙기에 있어서는
숙기료 전액의 20% 를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회규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효
력을 갖는다.



1968年度決算에 대한 監查報告書

1968年度 決算에 대한 監查報告書를 드리겠습니다.

收入支去內訳은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습니다.

收入이 41万3,517원이고 支去總額은 24万475원
으로써 理金殘高가 17万3,042원입니다.

먼저 收入支去內訳을 살펴보면 收入에
있어서는 当初予算是 81万7,000원이었으나 마는 実
收入은 41万3,000원으로 約 48%의 低調한 実績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會誌發刊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廣告收入으로 주로했던 30万원이 全然, 收入
되지 않았으며 온原因이 있습니다.

다음은 支出에 있어서 当初 予算是 81万7,000원
입니다. 마는 実際 支去總額은 24万원으로 約
24%의 執行實績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法人設立認可가 늦어짐에 따라 費料
講習以外에는 事項은 하지 못한데 불과하고 9,000

비자

支出去에 있어서 웃고 해야 되겠라고 생각되는
것은

첫째 支出去目이 잘못된 것이 몇가지 발견되었고
또한 決算書에 나와 있는 事業費中 記念品
代 56,700 원은当初 추산費目에 없는 것으
로 會議費中 總會費나 주席費에서 支出
되어 있어야 한다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現在 經常費가 주席費에서 빠져되고
있을 때마는 추산上에 표기할 하루 두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預金憑帳과 支出去 帳과의 일치가 문제
되는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매도
指摘되었을 때마는 적은 솔직을 허용한
데 따라 찾는 総額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 한 限度 (5,000 원이라 두기 10,000 원)의
額數를 넘지 않아 預金을 保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된 다.

以上으로서 전단히 調査報告書를 마치겠습니다.